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528 호

2003 년 7 월 25 일 금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03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04호(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4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3-32호(2002년남동구세입·세출결산고시)----- 5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59호(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
이의신청공고(남동문화근린공원조성공사))----- 1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60호(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
및이의신청공고(돌굴어린이공원조성공사))----- 1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61호(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및동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공고)- 1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62호(무단방치차량강제폐차공고)----- 2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63호(노상적치물등의보관및처리에관한공고)----- 2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64호(재결서정본공시송달공고(논현2지구,제1차))-- 3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65호(재결서정본공시송달공고(논현2지구,제2차))-- 3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66호(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
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논현2택지))----- 35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조 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7. 25.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03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 663명
3. 총 계: 681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의 개정 및 표준정원
 제 고시(행정자치부고시 제2003-17호)에 따라
 * 보정정원 내에서 증원함으로써, 정원불부합 현원을 해소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하여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집행기관 정원 : 13명 증원(제2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7. 25.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04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항 제2호중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도시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출범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상임위원회의 소관중 총무위원회에 “도시관리공단”을 추가(제3조 제2항 2호)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3-32호

2002년남동구세입·세출결산고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고시합니다.

2003. 7.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세입결산총괄

(단위: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세입예산총액	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	미수납액잔액		비율
					수납총액	과오납입환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액	다용년도이월액	
세입합계	174,952,153,000	29,767,171,000	204,719,324,000	238,587,450,323	214,868,698,939	112,385,720	214,756,313,219	23,811,137,104	818,239,397	22,992,897,707	90%
일반회계	146,526,280,000	24,654,997,000	171,181,277,000	185,251,988,593	172,333,977,459	101,606,770	172,232,370,689	13,019,617,904	656,370,210	12,363,247,674	93%
지방세	20,231,792,000		20,231,792,000	28,495,047,816	20,907,468,791	49,113,710	20,858,351,081	7,636,696,735	606,509,210	7,030,187,505	73%
모형세	14,888,343,000		14,888,343,000	16,337,819,850	15,412,346,310	26,620,310	15,391,729,200	946,190,650	209,790	945,980,860	94%
목적세	4,633,449,000		4,633,449,000	4,794,783,661	4,765,613,211	1,956,320	4,763,658,891	31,124,770		31,121,770	103%
과년도수입	720,000,000		720,000,000	7,352,344,305	729,502,070	26,539,080	702,962,990	6,659,381,315	606,299,440	6,053,081,875	10%
세외수입	37,197,739,000	24,654,997,000	61,852,736,000	67,288,811,177	62,394,425,068	48,535,060	62,345,890,008	5,392,921,169	49,861,000	5,333,060,169	92%
경상적세외수입	16,717,047,000		16,717,047,000	17,584,365,716	17,371,098,066	8,823,200	17,362,274,866	222,090,850		222,090,850	99%
임시적세외수입	20,480,692,000	24,654,997,000	45,135,689,000	50,144,445,461	45,023,327,002	39,711,860	44,983,615,142	5,160,830,319	49,861,000	5,110,569,319	90%
지방교부세	1,710,000,000		1,710,000,000	1,737,000,000	1,737,000,000		1,737,000,000				10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7,219,320,000		47,219,320,000	47,289,320,000	47,289,320,000		47,289,320,000				100%
보조금	40,167,429,000		40,167,429,000	40,001,879,600	40,005,765,600	3,956,000	40,001,809,600				100%
국고보조금등	24,289,450,000		24,289,450,000	24,219,392,000	24,222,909,000	3,517,000	24,219,392,000				100%
시도비보조금등	15,877,979,000		15,877,979,000	15,782,417,600	15,782,856,600	439,000	15,782,417,600				100%
특별회계	28,425,873,000	5,112,174,000	33,538,047,000	53,315,461,730	42,534,721,480	10,778,950	42,523,942,530	10,791,519,200	161,689,167	10,629,650,033	127%
의료급여기금	2,703,836,000		2,703,836,000	2,887,067,583	2,707,137,493		2,707,137,493	179,930,090	10,229,167	169,705,933	100%
자소특수민생활안정기금	1,731,726,000		1,731,726,000	1,971,776,129	1,787,918,879		1,787,918,879	183,557,250		183,557,250	193%
수자생물회계	6,850,624,000		6,850,624,000	14,020,931,596	8,509,791,686	10,778,950	8,499,012,736	5,521,918,860	151,640,000	5,370,278,860	124%
동수지구구획정리사업	1,328,287,000	2,870,613,000	4,198,900,000	13,152,794,961	12,746,942,961		12,746,942,961	405,857,000		405,857,000	104%

(단위: 원)

구	부	세입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세입예산환액 ②	정수결정액 ③	수 급 액			미수납액 (④-⑤)	미 수 급 액 차 리		비 율	
						수납총액 ④	과오납입환액 ⑤	실제수납액 ⑥ (④-⑤)		결손차입액	다음년도이월액	⑥/③	⑥/④
서원지구구획정리사업		7,942,444,000	2,241,561,000	10,184,205,000	16,422,615,152	11,922,354,152		11,922,354,152	4,500,261,000		4,500,261,000	117%	73%
인수지구구획정리사업		3,168,756,000		3,168,756,000	3,320,754,753	3,320,754,753		3,320,754,753				105%	100%
도원지구구획정리사업		4,700,000,000		4,700,000,000	1,539,821,556	1,539,821,556		1,539,821,556				33%	100%

세출결산총괄

(단위:원)

구분	예산액 ㉑	예산실행 중 ㉒	예산현액 ㉓	지출 원인행위액 ㉔	지출액 ㉕	다음년도이월액 ㉖				총액 [㉑-㉕]
						계	영시	사고	계속비	
합계	174,952,153,000	42,421,314,000	217,373,467,000	143,616,152,729	138,775,532,709	47,271,688,240	24,562,752,260	3,232,777,980	19,476,158,000	31,326,266,051
일반회계	146,526,280,000	24,655,001,000	171,181,281,000	123,843,926,259	119,051,683,109	28,912,855,900	22,377,202,260	2,928,200,640	3,607,453,000	23,216,739,991
일반행정비	38,706,986,000	1,129,000,000	39,835,986,000	35,773,274,539	35,773,108,909	1,471,536,000	1,471,536,000	0	0	2,591,341,091
사회개발비	78,628,403,000	17,178,432,000	95,806,835,000	73,020,381,710	69,080,117,250	22,100,656,370	15,880,003,260	2,613,200,110	3,607,453,000	4,626,061,380
경제개발비	11,560,305,000	7,302,831,000	18,863,136,000	11,830,197,200	10,978,386,140	5,340,663,530	5,025,663,000	315,000,530	0	2,544,086,330
인명위비	420,785,000	44,738,000	465,523,000	362,171,250	362,171,250	0	0	0	0	103,351,750
지원및기타경비	17,209,801,000	-1,000,000,000	16,209,801,000	2,857,901,560	2,857,901,560	0	0	0	0	13,351,899,440
특별회계	28,423,873,000	17,766,313,000	46,192,186,000	19,772,226,470	19,723,847,600	18,358,812,340	2,185,530,000	304,377,340	15,868,705,000	8,109,526,060
의료급여기금	2,703,836,000	0	2,703,836,000	2,654,987,700	2,654,987,700	0	0	0	0	48,848,300
저소득주민생활안정	1,731,726,000	0	1,731,726,000	0	0	0	0	0	0	1,731,726,000
주차장특별회계	6,850,624,000	1,584,509,000	8,435,133,000	2,556,542,690	2,556,542,690	1,810,063,340	1,505,488,000	304,377,340	0	4,068,524,970
장수지구구획정리사	1,328,287,000	7,437,559,000	8,765,846,000	4,347,745,970	4,347,745,970	4,418,101,000	0	0	4,418,101,000	-970
서창지구구획정리사	7,942,644,000	8,744,245,000	16,686,889,000	8,607,055,710	8,607,055,710	8,079,834,000	0	0	8,079,834,000	-710
만수지구구획정리사	3,168,756,000	0	3,168,756,000	228,282,990	228,282,990	680,042,000	680,042,000	0	0	2,260,431,010
도림지구구획정리사	4,700,000,000	0	4,700,000,000	1,377,611,410	1,329,232,540	3,370,770,000	0	0	3,370,770,000	-2,540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상황

단위 : 원

회 계 별	세입결산액 ㉔	세출결산액 ㉕	잉 여 금 ㉖(㉗-㉘)	영 역				원년도 채무상환 ㉙	잉여금잔액 잔(당-금)	비고
				평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사용잔액			
합	214,753,313,219	138,775,532,709	75,980,780,510	24,562,732,260	3,232,777,960	(7,924,716,542) 11,551,441,458	1,508,535,000		35,125,233,812	
일	172,232,370,689	119,051,686,109	53,180,686,580	22,377,202,260	2,928,200,640	3,607,453,000	1,459,687,000		22,808,142,680	
박	42,523,942,530	19,723,847,600	22,800,094,930	2,185,530,000	304,577,340	(7,924,716,542) 7,943,988,458	48,848,000		12,317,151,132	
소	42,523,942,530	19,723,847,600	22,800,094,930	2,185,530,000	304,577,340	(7,924,716,542) 7,943,988,458	48,848,000		12,317,151,132	
기	2,707,137,493	2,654,987,700	52,149,793				48,848,000		3,301,733	
다	1,787,918,879	0	1,787,918,879						1,787,918,879	
북	8,499,012,736	2,556,542,690	5,942,470,046	1,505,488,000	304,577,340				4,132,404,706	
별	12,746,942,961	4,347,745,970	8,399,196,991			4,418,101,000			3,981,095,991	
회	11,922,354,152	8,607,055,710	3,315,298,442			(4,764,535,558) 3,315,298,442			0	
제	3,320,754,753	228,282,990	3,092,471,763	680,042,000					2,412,429,763	
도	1,539,821,556	1,329,232,540	210,589,016			(3,160,180,984) 210,589,016			0	

※ ① 원년도 채무상환은 순세계잉여금에서 하셔야 함.

② 잉여금잔액은 잉여금에서 원년도 채무상환액을 공제한 후의 잔여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과는 그 성격이 다름에 유의

③ 자금없는 ()로 별도표시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59호

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구월동 산1-14번지 일원 남동문화근린공원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사실확인에 따른 관계공부및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3. 7. 2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편입대상 물건의 지번 : 구월동 620-13, 산 5-1, 산 5-4, 산 5-6, 산 5-7
2. 편입대상물건 및 정당권리자의 현황 : 별첨
3. 관계공부 열람장소 : 남동구청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3. 7. 21 - 8. 19
5. 이의신청 방법 :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2003. 8. 19일까지) 증빙서류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토 지 조 서

■ 사업명 : 구월동 산1-14번지의 남동문화근린공원 조성공사

번호	소재지			면 적			공유 지분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동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잔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내용	
1	구월동	620-13	전	1,448	1,448	0	-	전 1,448	변갑수	주안동1250 쌍용 7/703				
2	구월동	산5-1	임	2,614	2,614	0	-	임 2,614	김철수	압구정동493 한양 25/603				
3	구월동	산5-4	임	2,349	1,709	640	공유 (1/2)	임	김덕영	용현동628-39				
								1,709	방삼순	만수동 1048 금호104/1501				
4	구월동	산5-6	임	1,595	1,595	0	공유 (2/3)	임	신익수	동대문담심리 989-1 우성그린 102/1606				
								1,595	신 훈	밤배동877-3				

번호	소재지			면적			유 공 지 분	실효이용 상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등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잔여		면	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내용	
5	구월동	산5-7	임	1,595	1,595	0	유 공 (1/2)	임		양래원	구월1097-14 상일빌1/102	장래일 남동농협 김순희	부평 70-87 만수1014-1 만수주공40 5/103	가압류 가압류 근저당	
								1,595		유용숙	중동1054중흥 마을 602/401				
계		5		9,601	8,961	640		8,961							

물 건 조 서

■ 사업명 : 구월동 산1-14번지의 남동문화근린공원 조성공사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 류 (용 도)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동명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 소	관리의 종 류 내 용	
1	구월동	620-13	농기계보관소	목재,천막	7.32	최종용	구월4동1309-25				464-3485
2	구월동	산5-1	채소 재배사 농기계보관소	비닐,파이프 천막, 파이프	8.51 6.08	김완봉 박영철	구월4동349-741 만수1043주공902/1501				468-5925 461-7321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60호

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만수동 822-31번지일원 돌곶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사실확인에 따른 관계공부및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3. 7. 2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편입대상 물건의 지번 : 만수동 822-19, 822-31, 822-32
2. 편입대상물건 및 정당권리자의 현황 : 별첨
3. 관계공부 열람장소 : 남동구청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3. 7. 21 - 8. 19
5. 이의신청 방법 :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2003. 8. 19일까지) 증빙서류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토 지 조 서

▲ 공사명 : 만수동 822-31번지 일원 톨골공원 조성공사

번 호	소 재 지			면 적			공유 지분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동 명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잔 여		잡종지	놀이터	도로	대지	성 명	주 소	구 분	성 명	주 소	
1	만수	822-19	구	4636.0	730.0	3906.0				730.0		국(건설부)					
2	만수	822-31	잡	1,031.0	1,031.0	0		204.0	654.0		173.0	국(재무부)					
3	만수	822-32	잡	325.0	325.0	0		220.0			105.0	국(재경원)					
4																	
5																	
6																	
7																	
8																	
9																	
10																	

가 옥 조 서

◆ 공사명: 만수동 822-31번지 일원 돌굴공원 조성공사

번호	소재지		면적(㎡)			구 조	용 도	소유자		비고
	등명	지번	필면적	잔여면적	총면적			성명	주소	
1	만수	822-31	136.10	0	136.10	샷시,브럭,철골,비닐,부직포	화원	김종기		032-461-7447
			15.90	0	15.90	목조, 부직포	주택			
	건축물 합계		152.00	0	152.00					
			1식	0	0	F.R.P	화장실			
			10.5㎡	0	0	능형망웁스	담장			
2	만수	822-31	13.72	0	13.72	샷시	상가	김종기		032-461-7447
3	만수	822-32	89.49	0	89.49	목조, 스테트	주택	홍성복	남동구 만수동 822-32	032-472-5648
			6.00	0	6.00	목조, 스테트	창고			
			10.56	0	10.56	목조, 철근	창고			
			0.90	0	0.90	목조, 스테트	화장실			
	건축물 합계		109.21	0	109.21					
4	만수	822-32	1식	0	0	F.R.P	화장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61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및동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 개정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7. 2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규칙명: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

2. 개정취지

청소년지도협의회 지도위원의 수를 동별 10인 이내에서 20인 내외로 증원 조정하여 지도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도협의회 운영을 위한 관련규칙을 제정하여 청소년 지도활동의 내실 있고 현실적인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조례안 별첨”

“규칙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 및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2003년 8월 9일까지 의견서(A4작성)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8. 참조:문화홍보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453-2122)또는 FAX(453-210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시 : 2003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현재 청소년 지도위원 10인 이내로 구성된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로는
내실있는 지도활동이 어려우므로 지도위원 수를 증원하여 효율적인
지도활동을 함으로서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 지도위원의 수를 “20인 내외”로 조정
(안 제9조)

☐ 본 문

: 별 첨

☐ 신 · 구조문 대비표

: 별 첨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10인 이내”를 “20인 내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 (구성)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u>10인</u>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위촉 한다.	제9조 (구성) ----- ----- <u>20인</u> 내외----- ----- ----- ----- -----.

인천광역시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에 의한 청소년지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사항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와 동 단위에 남동구 청소년 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구 협의회는 각 동 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하고, 동 협의회는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①구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지도 보호 및 육성사업, 시행계획 수립의 협조 및 건의
2. 청소년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동 협의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상호협조와 연락, 정보의 수집교환등
4. 기타 청소년 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등

② 동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건전생활 지도사업
2.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유익한 환경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
3. 기타 청소년지도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4조(임원 및 임기) ①구·동 협의회 임원은 각각 회장1인, 부회장1인, 총무1인을 둔다.

②동 협의회 임원은 청소년지도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구 협의회 임원은 동 협의회장 중에서 호선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구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동 협의회는 동 협의회장을 새로 선출한다.

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구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소집하며, 동 협의회의 정기회는 매월 1회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구청장이나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④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회의 일시 및 장소

2.재적위원수 및 의결정족수

3.출석위원의 성명

4.토의사항 및 의결사항

5.회장, 부회장과 출석위원 3인 이상의 서명날인

제6조(의결)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협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위원명부,회의록 관리등 일반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각 협의회 총무가 담당한다.

제8조(지원등)구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비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구청장의 임무)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은 구·동협의회 정비 및 운영상황을 수시 지도하는 등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운영규정)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시 : 2003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 제14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지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협의회의 목적, 구성 및 기능 규정(안 제1조 내지 제3조)
- 협의회의 임원, 선출방법 및 임기등을 규정(안 제4조)
- 필요경비등의 지원 및 구청장의 임무(안 제8조 내지 제9조)

☐ 본 문

: 별 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 첨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62호

무단방치차량강제폐차공고

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 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이전(폐차)명령하오니, 해당차량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는 본 공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아래 공고 기간까지 자진이전(폐차)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강제처리(폐차, 매각)하고 아울러 동법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7. 2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3년 7 월 21 일 ~ 2003년 8 월 4 일 까지(15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03 년 8 월 4 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기전산업(주)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6-7 ☎ 814-4400
 - (주)서울폐차사업소
인천 남동구 고잔동 184번지 ☎ 442-6660
 - 인천폐차사업소
인천 남동구 논현동 723-2 ☎ 814-7077
4. 강제처리(폐차)대상 차량 서울6오2784 외 44대

연번	차량번호	차 명	성 명	주 소	방 치 장 소	비 고
412	서울6오2 784	베스타	주)모 드기획	서울용산구한강로1 가231-19우석빌딩	만수1동109-17	
421	서울1부4 892	쏘나타	김인철	서울종로부암동260- 22	구월동1446	
422	인천73노 7199	이코노라 인	이상성	인천서구가좌동184- 47	구월동1446	
424	경기32가 3942	엑셀	손귀면	서울송파구마천동12 0-10	간석동918-5	
437	경기83가 7775	와이드봉 고	박성기	경기부천원미중동10 55중흥마을618-602	공단142브릭	
439	경기2노1 905	티 코	태주화 학(주)	경기성남시중원구상 대원동353-31	간석동275-1	
442	인천2라4 538	에스페로	최인식	인천계양구작전동26 -1뉴서울아202/1903	만수동879-1	
445	80라4917	마이티장 축	진수천	인천남동논현동563- 3논현주공202/1101	논현동2-1	
448	번호미상	엘란트라	소정영		고잔동652-1	
449	인천83다 4950	프레지오	성기범	인천남동만수동산8 번지-2	구월동1380	
454	인천1거6 064	로얄프린 스	주)백 산산업	인천남동간석동113- 1	만수동1008	
455	번호미상	브림			만수5동911-8	
456	인천80마 9550	마이티	윤종숙	인천남구수의동2-11 0미도홈타운303	만수동876	
458	인천80마 7867	프라이드 밴	김희정	인천남구주안동856- 55신기마을빌라4차2 02	간석4동378-1	
459	인천31머 1653	프린스	임승만	인천남동간석동436- 14	구월동1134	
464	번호미상	엑셀			간석동5-4	
465	번호미상	스텔라			간석동5-4	
466	인천4라2 147	티 코	손미숙	인천남구용현동611- 87		

연번	차량번호	차 명	성명	주 소	방 치 장 소	비 고
467	번호미상	쏘나타			간석동5-4	
468	인천31나 7677	엑셀	이은림	인천남동서창동62	서창동75-1	
470	번호미상	엘란트라			고잔동652-1	
471	인천31더 4956	엘란트라	김종미	인천남동구월동1202-7 성화빌라1/302	구월동139-5	
472	강원27러 7841	프린스	이상수	강원횡성군횡성읍읍하 리375-13	구월동247동5	
473	인천3거7 601	엘란트라	이병철	인천남동간석동770-18 3츠	간석3동79-27	
474	인천4가5 341	에스페로	최수분	인천계양효성동24-49 현대.아.201/1705	구월동201-157	
475	경기호40 76	프린스	서동필	인천계양작전동580현 대.아.204/208	간석동310-10	
476	서울38거 3939	프라이드 베타	이종운	서울강북수유동530/10 5동아하이츠빌라B02	간석동432-8	
477	인천80다 2063	포터	주)민영 건설	인천남동만수동1025-9	만수동1073	
478	인천7나7 403	와이드봉 고	김정자	인천부평구삼산동167- 60건영빌라지1호	공단132/8롯데	
479	경기94고 4622	포토	윤대원	인천남동구월동6-5대 현그랑빌202	구월2동6-1	
480	인천7나8 400	베스타	이경희	경기시흥시정왕동1863 대림A1단지630 1/901	구월2동6-1	
481	인천80다 3148	와이드봉 고	김선수	인천남동구월동1252-1 6영중빌라10/202	간석동444-6	
484	인천31무 7522	슈퍼살롱	양영준	인천남동만수동900-18 영광다세대가동201	간석2동160-1	
485	충남45라 6004	프라이드 베타	주)거성 산업개 발	충남당진군당진읍원당 리312청구A상가201	간석3동36	
489	서울3스9 676	쏘나타	전용운	인천남동간석동769-1	간석동193	
490	인천30가 8019	쏘나타	노기용	인천부평효성동200금 호타운10동2004	간석동193	

연번	차량번호	차명	성명	주소	방치장소	비고
491	광주8더3 216	포터	김정복	광주북구우산동328-6	간석동193	
493	인천31거 2742	프린스	서영준	인천남동간석동117-7 다가구주택501	만수3동839-5	
494	인천7로9 006	포터	주)한 외	인천남동구논현동434- 4 44/4롯데	구월동201-106	
495	경기67나 6457	누비라	신종태	경기김포시북변동411- 5	남촌동10/7롯데	
496	인천70다 1653	타운너	김재근	강원도철원군갈말읍동 막리771	간석동88-1	
497	인천31로 5834	쏘나타	송근석	인천남구주안동599-1	만수동946-17	
498	인천31로 5834	쏘나타	김광오	인천남구도화동548-31	간석동508-158	
499	인천31고 2001	프린스	정탁웅	인천연수구청학동462- 1 301	만수동968-6	
500	인천31고 4876	쏘나타	안향숙	인천남구주안동981-3 대송파인빌101동202	구월동1253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63호

노상적치물등의보관및처리에관한공고

우리구 관내 도로를 무단점용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도로법 제54조7(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에 의거 대집행하고 대집행시 수거된 적치물을 동법시행령 제29조의5(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제2항에 의거 공고하오니, 해당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리자가 아래 공고 기간내에 동시행령 제29조의6에 의한 적치물등의 반환을 요구시 동법 제86조의2(과태료)에 의거 과태료부과 후 반환토록 하겠으며, 아래 공고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동법시행령 제29조의7(미반환적치물등의 귀속)에 의거 우리구에 귀속 처리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7.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3년 7월 22일 ~ 2003년 8월 5일(14일간)
도로법시행규칙제29조의2(적치물의관리등)2항
2. 적치물 귀속 처리일 : 2003년 8월 5일이후부터 3개월경과후
3. 적치물 귀속 처리내용 : 폐기처리
4. 적치물 보관 및 처리대장 : “붙임 참조”

적치물 보관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	물건명	수량	보관 년월일	보관장소	위반(적치)장소	취급자	비고
1	펜티(박스)	18	2003. 07.01	간석동창고	간석시장 SK앞	한상호	도로무 단점용
2	대나무발	5	2003. 07.01	"	남촌동 사거리	"	"
3	파라솔	2	2003. 07.01	"	남촌동 사거리	"	"
4	이불	1	2003. 07.02	"	간석시장SK앞	"	"
5	양말	1	2003. 07.02	"	간석시장SK맞은 편	"	"
6	콩, 팔	2	2003. 07.02	"	간석동국민은행 앞	"	"
7	마늘	10	2003. 07.02	"	간석시장 SK앞	"	"
8	옷(박스)	1	2003. 07.02	"	간석동 국민은행 앞	"	"
9	화분	2	2003. 07.02	"	만수6동 신한은 행앞	"	"
10	뽕튀기	1	2003. 07.02	"	만수6동 신한은 행앞	"	"
11	파라솔	1	2003. 07.02	"	남촌동 사거리	"	"
12	손수레1 가스통1 천막3	5	2003. 07.03	"	구월2동LG서비 스센타옆	"	"
13	가스통	2	2003. 07.03	"	"	"	"

※ 적치물 귀속처리일 : 공고일 이후부터 3개월경과후 폐기처분함.

적치물 보관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	물건명	수량	보관 년월일	보관장소	위반(적치)장소	취급자	비고
14	옷(T)	1	2003. 07.05	간석동창고	만수6동 신 한은 행 앞	한상호	도로무 단점용
15	악세사리	2	2003. 07.05	“	“	“	“
16	양말1 티 1	2	2003. 07.05	“	만수6동기아자동 차서비스앞	“	“
17	죽부인	4	2003. 07.05	“	만수6동사무소앞	“	“
18	행주	2	2003. 07.05	“	“	“	“
19	악세사리	1	2003. 07.10	“	만수6동국민은행 앞	“	“
20	잡곡	1	2003. 07.10	“	“	“	“
21	티	47	2003. 07.10	“	“	“	“
22	바지	1	2003. 07.10	“	“	“	“
			이	하	여	백	

※ 적치물 귀속처리일 : 공고일 이후부터 3개월경과후 폐기처분함.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64호

재결서정본공시송달공고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인천논현2지구, 제1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2003. 6. 17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여 재결서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불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우리구 도시계획과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03. 7.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2. 사업의종류 : 택지개발사업(인천논현2지구)
3. 재결일자 : 2003. 6. 17
4. 공고기간 : 2003. 7. 24~2003. 8. 7
5. 재결서정본교부처 및 문의전화
 - 교부처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도시계획과
 - 전 화 : 032)453-2662
6. 공시송달대상
 - 소유자 및 관계인
 - 최현숙외 6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3 주공아파트419동1308호
- ※ 재결서정본 공시송달대상명세 첨부
7. 기타

재결서 정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결서 정보 공시송달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인천논현2지구 1차, 이의제결)

순번	성명	주소	반송사유	비고
1	최현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3번지 주공아파트 419동 1308호	이사감	
2	최성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3번지 주공아파트 419동 1308호	"	
3	송희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3번지 주공아파트 419동 1308호	"	
4	안정은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595-4번지(8/1) 금호연립5차 가동 106호	"	
5	이길웅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5번지 주공아파트 806동 612호	"	
6	서진석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15-2번지 석수엘지빌리지 302동 302동	수취인 미거주	
7	박은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99-2번지 (8/3)	이사감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65호

재결서정본공시송달공고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인천논현2지구, 제2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2003. 6. 17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여 재결서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불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우리구 도시계획과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03. 7.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2. 사업의종류 : 택지개발사업(인천논현2지구)
3. 재결일자 : 2003. 6. 17
4. 공고기간 : 2003. 7. 24~2003. 8. 7
5. 재결서정본교부처 및 문의전화
 - 교부처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도시계획과
 - 전 화 : 032)453-2662
6. 공시송달대상
 - 소유자 및 관계인
 - 최상호 :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260 고층주공아파트811동602호
 - ※ 재결서정본 공시송달대상명세 첨부
7. 기타 -
 - 재결서 정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66호

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

대한주택공사 논현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인천논현2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논현동 및 고잔동 일대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사실확인원의 발급에 앞서 관계공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편입대상 물건의 지번 : 별첨
2. 편입되는 물건 및 정당권리자의 현황 : 별첨
3. 관계공부 열람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3. 7. 25 ~ 2003. 8. 23(30일간)
5. 이의신청 방법 :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003. 8. 23일까지) 불복사유를 문서(관계서류)로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주) 위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된 바대로 소유사실확인원을 발급합니다.
6. 이의신청 접수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재산세팀(☎453-2284)

2003. 7. 2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보 상 액 산 정 조 서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종류	구 조	규격(㎡)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1	논현동	333-2	가옥	브릭스레트	103.66	배영진	남동구 논현동 333-2	
			가추	선라이트	7.50			
			가추	목조스레트	10.65			
			창고	브릭스레트	4.00			
			화장실	목조스레트	7.50			
2	논현동	411-43	가옥	브릭스레트	80.75	이강현	남동구 논현동 411-43	
3	논현동	324-16	가옥	브릭스레트	193.25	장세춘	남동구 논현동 324-16	
			가추	브릭스레트	17.16			
			가추	브릭스레트	8.82			
			가추	목조스레트	15.75			
			창고	적벽돌스레트	9.60			
			가옥	브릭기와	38.56			
			가추	브릭스레트	7.14			
			가추	목조스레트	5.60			
			가옥	적벽돌기와	73.90			
			가추	목조스레트	31.14			
			창고	적벽돌스레트	6.75			
			보일러실	스레트	5.70			
			창고	적벽돌스라브	13.80			
			가추	목조스레트	15.00			
			창고	목조스레트	30.78			
			화장실및 연탄광	브릭스레트	6.60			
			창고 및 화장실	브릭스레트	18.00			
4	논현동	산66-5	가옥	브릭스레트	131.95	이갑성	남동구 논현동 411	
			화장실	브릭스레트	2.25			
			가옥	목조스레트	15.00			
			창고	브릭스레트	5.40			
5	논현동	541	가옥	브릭스레트	46.06	안춘자	남동구 논현동 541	
			가옥	브릭스레트	38.54			
			창고	브릭스레트	28.00			

보 상 액 산 정 조 서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종류	구 조	규격(㎡)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6	논현동	351-55	가옥 가추	브릭스레트 목조선라이트	150.48 22.44	김형준	남동구 논현동 351-55	
7	논현동	535	가옥 가옥 가추 가추	브릭스레트 목조스레트 목조선라이트 목조선라이트	80.34 13.64 7.90 5.28	김재식	남동구 논현동 535	
8	논현동	산71	가옥 보일러실 화장실 창고	브릭스레트 브릭스레트 브릭스레트 브릭스레트	63.14 2.70 2.80 6.75	박종우	남동구 논현동 산71	
9	논현동	산62-1	가옥 가옥 닭장 창고	브릭스레트 브릭스레트 목조스레트 목조스레트	51.75 34.20 66.75 18.55	김형규	남동구 논현동 산62-1	
10	논현동	277-1	가옥 창고 가추 화장실	브릭스레트 브릭스레트 목조선라이트 브릭스레트	26.04 4.60 14.00 3.90	조구환	남동구 논현동 227	

